

해양경찰청 전문경력관(항공분야)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해양경찰청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2월 5일
해양경찰청장

1 임용예정인원 (2개 직위, 총 8명)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7명)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항공 (조종)	전문경력관 가군	S-92	흰수리 (KUH-1)	팬더 (AS-565)	AW-139	정년적용	지방청 항공단(대)
		1명	4명	1명	1명		

※ 조종의 경우 하나의 기종에만 지원 가능(다른 기종 중복 지원불가)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1명)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항공 (정비)	전문경력관 나군	1명	정년적용	중부지방청 항공단

2 임용예정직무

지원코드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항공	조종	전문경력관 가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경찰청 보유 헬리콥터의 기장으로 주·야간 해상 인명구조, 응급환자 이송 원거리 해상치안 대응을 위한 대형함정 탑재(주야간 이착함) 해양경찰청 헬리콥터 운항관리 및 교육훈련 교관 임무 등
	정비	전문경력관 나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기 정비(전자·전기·계기) 항공기에 대한 정비 및 관리를 통해 감항성 확보 항공기 검사정비 수행 항공기 결함사항 확인 및 조치 항공부품(수리부속) 관리유지 및 재고 파악 등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전문경력관 규정,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가군(2025.4.4.), 나군(2025.3.14.)]

- 조종(전문경력관 가군)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헬기조종(S-92)	응시요건	필수자격(자격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안전법」 제35조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헬리콥터에 한함)을 소지한 사람○ 「항공안전법」 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항공안전법」 제40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응시 요건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리콥터 조종시간 총 2,000시간 이상(다발 헬리콥터 조종 500시간 포함)을 보유한 사람 ○ S-92 기장 이상 경력 보유자 <div style="background-color: #ffffcc;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 이내* 헬리콥터 조종경력 반드시 포함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모의 비행시간 제외(비행시간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div>
헬기조종 (KUH-1)	응시 요건	필수 자격 (자격 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안전법」 제35조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 (헬리콥터에 한함)을 소지한 사람 ○ 「항공안전법」 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 「항공안전법」 제40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응시 요건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리콥터 조종시간 총 2,000시간 이상(다발 헬리콥터 조종 500시간 포함)을 보유한 사람 ○ KUH-1 기장 이상 경력 보유자 <div style="background-color: #ffffcc;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 이내* 헬리콥터 조종경력 반드시 포함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모의 비행시간 제외(비행시간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div>
헬기조종 (AS-565)	응시 요건	필수 자격 (자격 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안전법」 제35조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 (헬리콥터에 한함)을 소지한 사람 ○ 「항공안전법」 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 「항공안전법」 제40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응시 요건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리콥터 조종시간 총 2,000시간 이상(다발 헬리콥터 조종 500시간 포함)을 보유한 사람 ○ AS-565 기장 이상 경력 보유자 <div style="background-color: #ffffcc;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 이내* 헬리콥터 조종경력 반드시 포함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모의 비행시간 제외(비행시간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div>

헬기조종 (AW-139)	응시 요건	필수 자격 (자격 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안전법」 제35조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 (헬리콥터에 한함)을 소지한 사람 ○ 「항공안전법」 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 「항공안전법」 제40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리콥터 조종시간 총 2,000시간 이상(다발 헬리콥터 조종 500시간 포함)을 보유한 사람 ○ AW-139 기장 이상 경력 보유자 ※ 최근 3년 이내* 헬리콥터 조종경력 반드시 포함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모의 비행시간 제외(비행시간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 정비(전문경력관 나군)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헬기정비	응시 요 건	자격증	○ 「항공안전법」 제35조에 의한 항공정비사(전자·전기·계기 한정 분야) 자격증명을 받은 자
		경력	○ 항공기 항공정비사(전자·전기·계기 한정) 자격 취득 후 전자·전기·계기 한정 분야 정비 실무경력 5년 이상 인자

☞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등 관련 사항은 “붙임2” 참조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을 모두 충족하면 응시 가능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전문경력관 가군(2025.4.4., 예정), 전문경력관 나군(2025.3.14., 예정)) 기준으로 판단

○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 경력증명서 제출 시,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관련분야 경력 여부)를 명시하고, 대표자 직인 및 발급자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MAIL) 제출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 시간제 근무 : 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ex) 4년간 주 20시간 근무 : $4년 \times (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다른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 함
 - * 검증을 위해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 모두 제출

5 시험 방법

가. 실기시험(조종)

- 정비 분야는 실기시험 미 실시

직렬	직류	직급	채용분야	평가방법	
				1차	2차
항공	조종	전문경력관 가군	헬기조종	▶ 운항조종능력(모의조종)	▶ 운항조종능력(실비행) * 1차 시험 합격자 限
○ 1차 합격자: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200% 범위 內 선발 ※ 단,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채용예정인원의 300% 범위 내 선발 ○ 2차 합격자: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150% 범위 內 선발 ※ 단,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채용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					

나.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다.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 소통·공감 :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헌신·열정 :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혁신 :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윤리·책임 :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⑤ 해양경찰 인재상 적합 여부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6 시험 일정

가. 원서접수 : '25. 2. 5.(수) ~ 17.(월), 12일간

나. 항공조종(전문경력관 가군)

단계	시험절차		채용분야	시험장소	시험일시	합격자 발표
1차	실기시험	모의조종	조종	별도공지	2. 24.(월) ~ 28.(금)	3. 7.(금)
		실비행			3. 10.(월) ~ 14.(금)	3. 20.(목)
2차	서류전형			-	3. 28.(금)	3. 31.(월)
3차	면접시험		인천	4. 4.(금)	4. 15.(화)	

다. 항공정비(전문경력관 나군)

단계	시험절차		채용분야	시험장소	시험일시	합격자 발표
1차	서류전형		정비	-	2. 28.(금)	3. 5.(수)
2차	면접시험			인천	3. 14.(금)	3. 25.(화)

라. 유의사항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등 변경될 수 있음
- 시험별 장소 및 합격자 명단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및 통합채용포털 게재 예정
-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및 통합채용포털를 통해 공고 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 바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기간 : 2025. 2. 5.(수) 17:00 ~ 17.(월) 17:00 * 마감일 제외 24시간 등록
 ※ 취소 가능 기간 : 2025. 2. 18.(화) 09:00 ~ 20.(목) 18:00
- 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통합채용포털(<https://career.gosi.kr>))
 ※ 응시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하여야만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됨
 ※ 응시사진 : 응시원서 제출시 등록용 사진파일(JPG, PNG) 필요(단, 정비 분야는 사진등록 필요 없음)
- 응시표 출력 : 2025. 2. 21.(금), 13:00부터 응시표 출력 가능

《 안내 사항 》

- 응시료 : 7천원(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 소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 반환
 - * 단,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우선 납부해야 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한 날 기준으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증빙자료(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원서접수 취소 기간까지 통합채용시스템(마이페이지-응시현황-제출서류 메뉴)에 등록하면 응시수수료는 반환됨(단, 결제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
 -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반환(단, 결제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

나. 제출서류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4"(제출서류 안내) 참조

- (조종) 실기 및 최종 합격자 대상 제출서류 별도 공지 예정(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없음*)
 *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단계에서 제출여부(미제출_첨부서류x) 확인 후 원서접수 진행
- (정비) 원서접수 시 통합채용포털에 업로드 * 서류별 스캔하여 1개 파일로 압축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1. 응시자 제출 서류 목록	○ 별지서식 제1호
	2. 이력서 1부	○ 별지서식 제2호
	3. 자기소개서 1부	○ 별지서식 제3호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서식 제4호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5호
	6.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 별지서식 제6호
	7.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8.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9. 경력(재직) 증명서 1부	
	10. 관련분야 주요 경력 요약서	○ 별지서식 제7호
개별사항	11.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별지서식 제8호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 응시자격 및 경력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 시 추가(보완) 서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모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험응시 불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귀책사유는 응시자에게 있음. 제출서류의 입증책임은 응시자에게 있고 확인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 불가
-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련 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처리비용을 제외한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 서류 반환청구 기간) 조종 : '25. 4. 15. ~ 5. 14. / 정비 : '25. 3. 25. ~ 4. 24.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교육 및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교육 입교일 : 2025년 5월 17일(예정) *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임용 예정일 :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소정의 교육 이수 후 임용
- 채용기간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정년 적용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구분	2025년도 월지급액 참고표(단위 : 원)	
	상한액	하한액
전문경력관 가군	6,554,400(40호봉)	2,798,500(1호봉)
전문경력관 나군	4,994,100(38호봉)	2,173,600(1호봉)

9 안내 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해양경찰청에서 공지한 시간에 늦게 도착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집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와 신분증 원본(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해야 함))을 소지해야 하며 응시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 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시험 일정 및 정보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채용정보』 또는 통합채용포털 (<https://career.gosi.kr>)에 게재 예정이며, 응시자는 시험시간, 장소, 준비물 등 공지사항의 내용을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 접속하여 갱신되는 공지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tax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the Hometax logo and various service categories like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etc.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민원증명' and contains a flowchart with four steps: 01 홈택스 로그인, 02 민원증명 신청진행, 03 민원증명 처리결과, and 04 발급완료 후 프린터 출력. A red circle and the number '1.' highlight the '사실증명신청' option in the left sidebar. Another red circle and the number '2.' highlight the '소득금액증명' option in the right sidebar menu.

● 기타 문의사항은 응시한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소종_본청 : 032-835-2436, 2636, 2736 / 항공정비_중부지방청 : 032-728-8916, 8716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85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할 수단이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코드번호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조종	헬리콥터 조종(S-92)	전문경력관 가군	1명	지방청 항공단(대)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야간 해상 순찰, 수색구조·응급환자 이송, 해상 대형특수 재난에 대응하는 특수구조대원 출동 이송 ○ 해상치안 대응을 위한 대형함정 탑재(이·착함) 및 통합방위·대테러 작전 ○ 해경청 헬리콥터 운항관리 및 교육훈련 교관 임무 등 ○ 시험비행 및 기술 유지 비행 ○ 필요시, 해경청 사정에 따라 타 기종 비행 ○ 그 밖에 헬리콥터 운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직급별 역량) 비행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기술적 전문지식, 전략적 사고력, 논리적 사고
-------	--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 항공안전 및 헬기운용 관련 기술 ○ 항공안전관리, 잠재위험 관리, 안전 증진 등 항공사고 방지에 관한 지식 ○ 해경청 헬리콥터의 특수성 및 해외 사례 분석에 필요한 지식 ○ 항공기상 및 항공 교통 관제 지식 ○ 항공기 관련 이론 및 실무에 대한 지식
-------	--

<p>※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p> <p>※ 다음 응시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p>		
응시 자격요건	응시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안전법」 제35조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헬리콥터에 한함)을 소지한 사람 ○ 「항공안전법」 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 「항공안전법」 제40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필수자격(자격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리콥터 조종경력이 총 2,000시간 이상(다발 헬리콥터 조종 500시간 포함) 보유한 사람(모의비행시간은 비행시간에서 제외) ※ 총 비행시간을 말함.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 비행시간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 해양경찰 보유 헬리콥터와 동일 기종(S-92) 기장 이상 경력 보유자 ○ 최근 3년 이내* 헬리콥터 조종 경력자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우대요건		없음

※ "필수자격요건(자격증 등)"과 "응시요건(경력)"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각각 충족하여야 함

코드번호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조종	헬리콥터 조종(KUH-1)	전문경력관 가군	4명	지방청 항공단(대)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야간 해상 순찰, 수색구조·응급환자 이송, 해상 대형특수 재난에 대응하는 특수구조대원 출동 이송 ○ 해상치안 대응을 위한 대형함정 탑재(이·착함) 및 통합방위·대테러 작전 ○ 해경청 헬리콥터 운항관리 및 교육훈련 교관 임무 등 ○ 시험비행 및 기술 유지 비행 ○ 필요시, 해경청 사정에 따라 타 기종 비행 ○ 그 밖에 헬리콥터 운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직급별 역량) 비행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기술적 전문지식, 전략적 사고력, 논리적 사고
-------	--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 항공안전 및 헬기운용 관련 기술 ○ 항공안전관리, 잠재위험 관리, 안전 증진 등 항공사고 방지에 관한 지식 ○ 해경청 헬리콥터의 특수성 및 해외 사례 분석에 필요한 지식 ○ 항공기상 및 항공 교통 관제 지식 ○ 항공기 관련 이론 및 실무에 대한 지식
-------	--

<p>※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p> <p>※ 다음 응시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p>		
응시 자격 요건	필수자격 (자격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안전법」 제35조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헬리콥터에 한함)을 소지한 사람 ○ 「항공안전법」 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 「항공안전법」 제40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리콥터 조종경력이 총 2,000시간 이상(다발 헬리콥터 조종 500시간 포함) 보유한 사람(모의비행시간은 비행시간에서 제외) ※ 총 비행시간을 말함.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 비행시간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 해양경찰 보유 헬리콥터와 동일 기종(KUH-1) 기장 이상 경력 보유자 ○ 최근 3년 이내* 헬리콥터 조종 경력자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우대요건		없음

※ "필수자격요건(자격증 등)"과 "응시요건(경력)"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각각 충족하여야 함

코드번호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조종	헬리콥터 조종(AS-565)	전문경력관 가군	1명	지방청 항공단(대)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야간 해상 순찰, 수색구조·응급환자 이송, 해상 대형특수 재난에 대응하는 특수구조대원 출동 이송 ○ 해상치안 대응을 위한 대형함정 탑재(이·착함) 및 통합방위·대테러 작전 ○ 해경청 헬리콥터 운항관리 및 교육훈련 교관 임무 등 ○ 시험비행 및 기술 유지 비행 ○ 필요시, 해경청 사정에 따라 타 기종 비행 ○ 그 밖에 헬리콥터 운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직급별 역량) 비행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기술적 전문지식, 전략적 사고력, 논리적 사고
-------	--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 항공안전 및 헬기운용 관련 기술 ○ 항공안전관리, 잠재위험 관리, 안전 증진 등 항공사고 방지에 관한 지식 ○ 해경청 헬리콥터의 특수성 및 해외 사례 분석에 필요한 지식 ○ 항공기상 및 항공 교통 관제 지식 ○ 항공기 관련 이론 및 실무에 대한 지식
-------	--

<p>※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p> <p>※ 다음 응시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p>		
응시 자격 요건	필수자격 (자격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안전법」 제35조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헬리콥터에 한함)을 소지한 사람 ○ 「항공안전법」 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 「항공안전법」 제40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리콥터 조종경력이 총 2,000시간 이상(다발 헬리콥터 조종 500시간 포함) 보유한 사람(모의비행시간은 비행시간에서 제외) ※ 총 비행시간을 말함.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 비행시간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 해양경찰 보유 헬리콥터와 동일 기종(AS-565) 기장 이상 경력 보유자 ○ 최근 3년 이내* 헬리콥터 조종 경력자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우대요건		없음

※ "필수자격요건(자격증 등)"과 "응시요건(경력)"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각각 충족하여야 함

코드번호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조종	헬리콥터 조종(AW-139)	전문경력관 가군	1명	지방청 항공단(대)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야간 해상 순찰, 수색구조·응급환자 이송, 해상 대형특수 재난에 대응하는 특수구조대원 출동 이송 ○ 해상치안 대응을 위한 대형함정 탐재(이·착함) 및 통합방위·대테러 작전 ○ 해경청 헬리콥터 운항관리 및 교육훈련 교관 임무 등 ○ 시험비행 및 기술 유지 비행 ○ 필요시, 해경청 사정에 따라 타 기종 비행 ○ 그 밖에 헬리콥터 운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직급별 역량) 비행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기술적 전문지식, 전략적 사고력, 논리적 사고
-------	--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 항공안전 및 헬기운용 관련 기술 ○ 항공안전관리, 잠재위험 관리, 안전 증진 등 항공사고 방지에 관한 지식 ○ 해경청 헬리콥터의 특수성 및 해외 사례 분석에 필요한 지식 ○ 항공기상 및 항공 교통 관제 지식 ○ 항공기 관련 이론 및 실무에 대한 지식
-------	--

<p>※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p> <p>※ 다음 응시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p>		
응시 자격 요건	응시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안전법」 제35조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헬리콥터에 한함)을 소지한 사람 ○ 「항공안전법」 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 「항공안전법」 제40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필수자격 (자격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리콥터 조종경력이 총 2,000시간 이상(다발 헬리콥터 조종 500시간 포함) 보유한 사람(모의비행시간은 비행시간에서 제외) ※ 총 비행시간을 말함.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 비행시간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 해양경찰 보유 헬리콥터와 동일 기종(AW-139) 기장 이상 경력 보유자 ○ 최근 3년 이내* 헬리콥터 조종 경력자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우대요건		없음

※ "필수자격요건(자격증 등)"과 "응시요건(경력)"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각각 충족하여야 함

코드번호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정비	항공정비	전문경력관 나군	1명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인천시 중구)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 정비(전자·전기·계기) ○ 항공기에 대한 정비 및 관리를 통해 감항성 확보 ○ 항공기 검사정비 수행 ○ 항공기 결함사항 확인 및 조치 ○ 항공부품(수리부속) 관리유지 및 재고 파악 등
-------	--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 (직급별 역량) 과업 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직렬별 역량)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정보관리능력, 문제해결력 등
-------	--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 정비 분야 기본 지식 ○ 항공정비(전자·전기·계기) 분야 전문 지식 ○ 항공기 결함 탐구 및 해소 능력 ○ 항공기 정비교범 이해 및 기술회보 검토 능력
-------	---

응시 자격요건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다음 응시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응시요건	<table border="1">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자격증</td> <td>○ 「항공안전법」 제35조에 의한 항공정비사(전자·전기·계기 한정 분야) 자격증명을 받은자</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경력</td> <td>○ 항공기 항공정비사(전자·전기·계기 한정) 자격 취득 후 전자·전기·계기 한정분야 정비 실무 경력 5년 이상인자</td> </tr> </table>	자격증	○ 「항공안전법」 제35조에 의한 항공정비사(전자·전기·계기 한정 분야) 자격증명을 받은자	경력
자격증	○ 「항공안전법」 제35조에 의한 항공정비사(전자·전기·계기 한정 분야) 자격증명을 받은자				
경력	○ 항공기 항공정비사(전자·전기·계기 한정) 자격 취득 후 전자·전기·계기 한정분야 정비 실무 경력 5년 이상인자				
우대요건		없음			

※ "필수자격요건(자격증)"과 "응시요건(경력)"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각각 충족하여야 함

붙임 3

실기시험 평가방법 및 기준

헬기조종(전문경력관 가군) 1차 실기시험 평가표

○ 전문경력관 가군 헬기조종 1차 기능실기 평가방법

평가방법	분야	계급	주요업무	평가사항
1차 기능실기	헬기조종	전문 경력관 가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 순찰 ▶ 항공 수색 및 구조 ▶ 주·야간 함상 이·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비행술 ▶ 야간 함상 이·착함 절차 ▶ 계기비행 절차 ▶ 항공실무능력

평가내용		배 점 기 준				특 점
		우수	양호	보통	불량	
항공기 함정 이동 (제자리비행, 수평이동) (10점)	함정 Hover(5점) * 10ft 유지	±5'	±10'	±15'	±20'	
		5점	4점	3점	2점	
	Side-Slip(5점) * 함정 좌현이동	0	±5°	±10°	±15°	
		5점	4점	3점	2점	
야간 함정 이함 요령 (25점)	증속·상승(15점) * 침로 30° off, 500fpm 상승	±50	±100	±150	±200	
		15점	12점	9점	6점	
	선회·수평비행(10점) * 60kts시 함정침로 선회, 400ft, 100kts시 좌선회	±5'	±10'	±15'	±2'	
		10점	8점	6점	4점	
기본비행 (5점)	증·감속(2.5점) * 400ft, 100kts 기준	±0'	±50'	±100'	±150'	
		2.5점	2점	1.5점	1점	
	상승·강하·선회(2.5점) * 500fpm	±2.5°	±5°	±10°	±20°	
		2.5점	2점	1.5점	1점	
야간 함정 착함 요령 (30점)	강하률(15점) * 1.2nm, 400ft, 60kts 기준, 0.5nm까지 300fpm 접근	±50	±100	±150	±200	
		15점	12점	9점	6점	
	동조기동 및 함정 착함(15점)	±2.5'	±5'	±10'	±15'	
		15점	12점	9점	6점	
계기비행 (30점)	계기 진입(15점) * 경로·상승·강하률	±0°/±100	±5°/±200	±10°/±300	±15°/±400	
		15점	12점	9점	6점	
	계기 전환(15점) * 속도/경로 유지	±0'/±5	±50'/±10	±100'/±20	±150'/±30	
		15점	12점	9점	6점	
특 점 계		100 점				점

※ 항공기 해상 착수 및 착함 실패시 실격

헬기조종(전문경력관 가군) 2차 실기시험 평가표

○ 전문경력관 가군 헬기조종 2차 기능실기 평가방법

평가방법	분야	계급	주요업무	평가사항
2차 기능실기	헬기조종	전문 경력관 가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 순찰 ▶ 항공 수색 및 구조 ▶ 주야간 합상 이·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비행술 ▶ 해상 구조능력 ▶ 해상 비행능력 ▶ 항공 안전

평가요소	세부평가항목	배점기준				득점	
		우수	양호	보통	불량		
기본 비행	제자리비행 수평이동 (10점)	고도 유지(10ft)	±1 5점	±2 4점	±3 3점	±4 2점	
		수평이동(Side-Slip)·Heading 유지	±2 5점	±4 4점	±6 3점	±8 2점	
	장주비행 (20점)	경사각·고도 유지(15°, 1000ft)	±1/100 5점	±2/150 4점	±3/200 3점	±4/250 2점	
		정속 상승·강하(80kts)	±5 5점	±10 4점	±15 3점	±20 2점	
		상승·강하율 유지(500fpm)	±100 5점	±150 4점	±200 3점	±250 2점	
		속도유지(100kts)	±5 5점	±10 4점	±15 3점	±20 2점	
	해상 임무 비행	모의 해상 인명 구조 (30점)	고도 유지(200ft, 3분내외)	±5 5점	±10 4점	±15 3점	±20 1점
고도 유지(100ft, 3분내외)			±5 10점	±10 8점	±15 6점	±20 4점	
위치 유지(Hoist 화면 기준)			1/4이내 15점	1/2이내 12점	3/4이내 9점	화면내 6점	
해상 비행	공중 조작 (30점) (자세안정 장치해제)	20kts이상 증·감속시 고도유지	±100 10점	±200 8점	±300 6점	±400 4점	
		±500fpm이상 상승·강하시 속도 유지	±5 10점	±10 8점	±15 6점	±20 4점	
		경사각(15°) 유지	±2 10점	±4 8점	±6 6점	±8 4점	
		항공안전(CRM) (10점) * 의사소통, 상황판단 및 인식 등					
총 합 계					점		
평가위원 의견							

붙임 4

제출서류 안내(항공 정비 분야에 한함)

응시원서에 포함되어 제출하여야 할 서류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직위별로 응시요건에 따라 필수서류가 다르므로,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1부 : 필수서류	○ 자필 서명 필수
2. 이력서 1부 : 필수서류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 자필 서명 필수
3. 자기소개서 1부 : 필수서류	○ A4 2매 이내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 필수서류	○ 별도 양식 없으며 A4 요약서 1매 + A4 5매로 작성 (총 6매 이내)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기재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필수서류	○ 자필 서명 필수
6.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 필수서류	○ 자필 서명 필수
7. 자격증 사본 1부 : 필수서류	○ 응시 자격증 사본
8. 주민등록 초본 1부 : 필수서류	○ 본인 기준 발급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 남자의 경우 병역 관련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구 분	내 용
9.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필수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경력증명서 제출 시,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관련분야 경력 여부)를 명시하고, 대표자 직인 및 발급자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MAIL) 제출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10. 관련분야 주요 경력 요약서	
11. 채용서류반환청구서	○ 제출서류가 원본인 경우

* **별지서식자료**는 1개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해야 하며, 용량은 10mb로 제한됨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 작성
- ③ 응시자격요건 :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의 응시자격 요건 중 선택
- ④ 응시자격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예. 〇〇분야 경력 요건 중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응시하는 자가 관련 직무분야에서 13년의 경력이 있을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8년의 경력은 '나.응시자격'의 경력란에 기입하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5년의 경력은 '다.우대요건'의 경력란에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시) 통상근무시간이 주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별지 서식 제3호>

자 기 소 개 서 (항공정비 분야에 한함 제출 시 문구 삭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	--	-----------	--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별지 서식 제4호>

직무수행 계획서 (항공정비 분야에 한함 제출 시 문구 삭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	--	-----------	--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분량은 요약서 A4 1매 + A4용지 5매(총 6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항공정비 분야에 한함) (제출 시 문구 삭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항공정비 분야에 한함)*

제출 시 문구 삭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계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귀하

<별지 서식 제7호>

관련분야 주요 경력 요약서 (항공 정비 분야에 한함  제출 시 문구 삭제)

근무기관 (부서포함)	근무기간	근무월일수	직위(급)	담당업무 및 주요실적	근무형태
OO주식회사 (부)	2011.1. 1 ~ 2012.3.10	00개월00일	책임연구원 (4급)	○ ○ ○	상근 (주40시간)
	2012.3.11 ~ 2014.3.11	00개월00일	책임연구원 (4급)	○ ○ ○	비상근 (주20시간)
OO주식회사 (부)			대리		시간제 (주20시간)
총 경력		00개월00일			

【작성요령】

-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② 근무처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할 것
- ③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예시) 1년 2월 10일 →14개월 10일
- ④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⑤ 주요수행업무 및 업무실적은 요약하여 80자 이내로 간략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재
- ⑥ 근무형태는 주당 근무시간 기재(예-전임 또는 주 00시간)

<별지 서식 제8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서류가 원본일 경우 신청가능>

(항공 정비 분야에 한함 📩 제출 시 문구 삭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에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